

# 씨드교회 교회법

## 제1장 총칙

### 제1조 교회 명칭

본 교회는 씨드교회(Seed Church)라 부른다.

### 제2조 교회 비전

본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에 위임하신 교회의 사명을 따라 말씀과 기도, 사랑의 공동체, 디아스포라 선교를 교회의 비전으로 삼는다.

### 제3조 교단

본 교회는 성경의 권위에 근거한 복음주의적 신앙 입장을 가진 초교파 독립교회(Independent Church)이다.

### 제4조 교회 신조

본 교회는 아래의 신조를 신자의 기본 교리로 삼는다. 교회 신조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를 모두 준수합니다.
2. 우리는 복음주의자이며 아래에 나열된 전국 복음주의 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의 성명서에 동의합니다.
3.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고, 유일하게 무오하며 권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4. 우리는 영원히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5. 우리는 주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죄가 없으시며, 기적을 행하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신 것과 능력과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6. 우리는 길을 잃고 죄있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7.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8.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잃어버린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게 되는,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의 부활을 믿습니다.
9.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영적인 하나됨을 믿습니다.
10. 우리는 교회와 성도가 변하지 않는 성경적 원리의 내용에 충실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유3).
11.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로서 변화하는 문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사역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고전 9:19-23).
12.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모든 사람과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케 하려는 노력 안에서 사람들과 문화를 구속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13.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지속적으로 세우는 것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문화, 새로운 하부 문화에 접근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믿습니다.
14. 가족에 대한 철학 :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지속되고 배타적인 관계로 결혼을 제정하셨고, 결혼을 벗어난 이성애, 동성애 또는 다른 종류의 모든 성행위는 죄라고 믿습니다. (창2:24-25; 출20:14, 17, 22:19; 레18:22-23, 20:13, 15-16; 마19:4-6, 9; 롬1:18-31; 고전6:9-10, 15-20; 딤후1:8-11; 유7).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으며, 자신의 출생 성별 이외의 성별을 취하는 모든 행위는 죄라고 믿습니다 (창1:27; 신22:5).

## 제2장 교인 구분 및 신급

### 제5조 교인 구분

본 교회의 교인은 출석교인과 등록교인으로 구분한다.

#### 1. 출석교인

본 교회에 출석하는 자로서 등록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자이다.

#### 2. 등록교인

씨드교회의 등록과정을 수료하고 등록교인 동의서에 서명한 자이다.

### 제6조 등록교인의 의무

1. 교회의 공예배에 참석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디아스포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2. 교회를 6개월 이상 출석하지 못할 때 또는 이주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날 때 교회에 알려야 한다.

### 제7조 등록교인의 권리

1. 본 교회의 공동체와 리더십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 교회의 담임목사 청빙, 회계결산 및 교인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다.

### 제8조 등록교인의 자격 정지

1. 정당한 사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이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등록교인의 자격이 정지된다.
2. 교회에 부덕한 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 교회 치리 심의를 거쳐 등록교인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제9조 등록교인의 복권

등록교인의 자격이 정지된 자는 사안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복권될 수 있다.

### 제10조 교인 신급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씨드교회 등록교인의 신급을 구분한다.

1. 원입교인: 유아세례나 세례를 받지 않은 자이다.
2. 유아세례교인: 공 교회의 정한 절차를 따라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서, 입교 절차를

받지 않은 자이다.

3. 세례교인: 공 교회의 정한 절차를 따라 세례를 받은 자이거나 유아세례인으로서 입교 절차를 받은 자이다.

## 제3장 교역자

### 제11조 교역자

교역자는 목사와 전도사이다.

### 제12조 목사

1. 목사 자격: 목사의 자격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본 교회가 인정하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자로서 신앙과 행위가 진실하고 설교, 가르침, 기도, 전도, 목양, 예배인도 등 목회에 필요한 은사를 가진 자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대외적으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
2. 목사 구분: 목사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 1) 담임목사: 교회를 담임하여 리더십을 총괄하며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이다.
  - 2) 목사: 예배, 심방, 행정, 교육, 선교, 봉사, 기타 사역 등을 담당하는 교역자이다.
3. 목사 직무: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집행하고 교인을 심방하며 교인을 위해 축도하고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역을 담당한다.

### 제13조 전도사

1. 전도사 자격: 전도사의 자격은 본 교회가 인정하는 신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한 자로서 신앙과 행위가 진실하며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 전도사 직무: 전도사는 예배, 교육, 행정, 선교, 심방, 기타 사역 등을 담당한다.

## 제4장 교회 직원

### 제18조 교회직원

교회직원은 목회스텝과 행정스텝으로 나눈다.

### 제19조 목회스텝

교회의 예배, 기도, MC, 양육, 선교, 전도, 행정, 봉사, 교육, 심방 등의 일을 맡은 유급 교역자로 전임 교역자, 비전임 교역자로 나눈다.

1. 전임(Full Time) 교역자: 상근하여 교회의 사역을 담당하는 교역자이다.
2. 비전임(Part Time) 교역자: 교회에서 정한 시간 동안 교회의 사역을 담당하는 교역자이다. 비전임 교역자는 하프타임 교역자와 파트타임 교역자이다.

### 제20조 행정스텝

교회의 행정을 담당하는 유급직원으로 전임직원과 비전임직원으로 나눈다.

1. 전임(Full Time) 직원: 상근하여 교회의 행정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2. 비전임(Part Time) 직원: 교회에서 정한 시간 동안 교회의 행정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 제5장 교회 리더십

### 제21조 구성

본 교회의 리더십은 목회사역팀, 목회지원팀, MC Leader로 구성된다.

### 제22조 목회사역팀

목회사역팀은 본 교회의 전임교역자로 구성되며, 필요시 비전임 교역자도 포함될 수

있다. 목회사역팀은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교회의 사역조직을 감독하며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기획하며 제시한다.

#### 제23조 목회지원팀

선출과 직무: 목회지원팀은 목회사역팀에 의해 MC leader 7명 이하로 구성되며 교회 전반 사항을 파악하고 목회사역팀을 도와 교회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한다.

#### 제24조 MC Leader

MC Leader는 교회의 기초 공동체인 MC모임을 인도하며 MC멤버를 돌본다.

## 제6장 이사회(Board of Trustees)

#### 제25조 이사회

이사회는 본 교회의 법적 대표기관이다.

#### 제 26조 이사회 구성

1. 구성: 이사회는 담임목사와 등록교인으로 구성하되 7명 이하로 한다.
2. 이사회 의장은 담임목사의 당연직으로 한다.
3. 첫 이사회의 구성은 담임목사가 추천하여 교인총회에서 참석교인의 과반의 찬성을 얻어 인준한다.
4. 이사의 보충이나 교체가 필요할시 이사회는 과반의 의결을 거쳐 후보자를 선출하고, 교인총회에서 참석 교인의 과반의 찬성을 얻어 확정된다.
5. 이사의 임기는 3년이며, 최소 일(1)년을 쉰 후에 재선출 될 수 있으나 총 7년 이상은 불가하다.
6.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에 의하여 소집되거나, 이사 2/3의 동의로 소집된다.

#### 제26조 이사회 직무

1. 이사회는 본 교회를 대표하여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2.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의 요청이나 이사 2/3의 동의로 교인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는 교회 부동산 등 재산의 매입 및 매각, 임대, 건축, 차입 및 전년도 예산의 10% 이상의 금액이 요구되는 기타 활동을 의결한다.
4. 이사회는 본 교회의 규정에 따라 등록교인의 치리직무를 수행한다. 치리의 대상은 사회 법규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 교회의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이사회는 등록교인 20% 이상의 청원과 이사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담임목사의 해임을 교인총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MC Leader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 및 교인총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담임목사를 해임할 수 있다.
6. 이사회는 담임목사 공석시 청빙위원회에 담임목사 추천을 요청한다.
7. 이사회는 지교회 설립 및 해산, 본 교회의 해산에 관해 의결한다.

## 제7장 교인총회

### 제27조 교인총회

1. 대상: 본 교회의 18세 이상의 등록교인으로 한다.
2. 내용: 정기 교인총회와 임시 교인총회로 나눈다. 정기 교인총회는 일 년에 한 번 모여 이사회를 인준하고, 목회지원팀에서 상정한 예산을 보고받고, 당 해 년도 결산을 인준한다. 의결은 과반수로 한다. 임시 총회는 담임목사 혹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 제 28조 청빙위원회(Nominating Committee)

1. 교인총회는 담임목사의 공석시,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2. 청빙위원회는 MC Leader중에서 7명 이하로 구성된다.
3. 청빙위원회는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4. 담임목사로 추천된 자는 이사회회의 2/3의 찬성을 통해 후보로 확정되며, MC Leader의 2/3, 교인총회에서 2/3의 찬성을 통해 확정된다.

## 제8장 교회법 개정

### 제29조 교회법 개정

교회법을 개정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록교인 10명 이상의 서명 동의로 개정안을 목회지원팀에 제출한다. 채택된 안건은 교인총회에서 의결한다.
2. 목회지원팀 2/3이상의 동의로 채택된 개정안은 교인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3. 채택되지 않은 개정안은 목회지원팀에서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4. 상충되는 조항의 유권 해석은 목회사역팀과 목회지원팀에서 결정한다.

## 부칙

제1조 교회법은 2020년 1월 19일 공포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개정된 교회법은 교인총회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 교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을 따른다.